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판서·공소장의 정보저장매체 첨부 허용
및 형사사건의 전자공시송달 방식 허용〉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33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주요내용	3
2. 현행제도 개관	6
3. 검토의견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희승의원 등 15인
2. 발 의 일: 2025. 7. 8.
3. 회 부 일: 2025.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사소송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에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상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온라인 게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엄격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소제기 등에 있어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형사 공시송달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부응하여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여 실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판서의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재판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서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2조).
- 나.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함(안 제64조).
- 다. 공소장의 내용 중 일부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부분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4조 및 제266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8조(재판서의 방식)¹⁾,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²⁾,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³⁾,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⁴⁾, 제266조(공소장부분의 송달)⁵⁾를 개정하여, 재판서 및 공소장의 일부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현행	개정안
第38條(裁判書의 方式) (생략) <u><신설></u>	第38條(裁判書의 方式)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재판서의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저장하여 재판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第42條(裁判의 宣告, 告知의 方式)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는 公判廷에서는 裁判書에 依하여야 하고 其他의 境遇에는 裁判書謄本의 送達 또는 다른 適當	第42條(裁判의 宣告, 告知의 方式) ----- ----- -----재판서등본(재판서에 정보저장매체

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64條(公示送達의 方式) ① (생략)

② 公示送達은 법원사무관등이 送達할 書類를 保管하고 그 事由를 法院揭示場에 公示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第254條(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狀) ① (생략)

② 公訴狀에는 被告人數에 相應한 副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公訴事實의 記載는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포함한다)-----

-----.

第64條(公示送達의 方式)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원게시장에 공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③·④ (현행과 같음)

第254條(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狀)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본(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등이 포함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등의 등본을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하여 공소장에 첨부하는

第266條(公訴狀副本의 送達) 法院 은 公訴의 提起가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公訴狀의 副本을 被 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送達하 여야 한다. 但, 第1回 公判期日 前 5日까지 送達하여야 한다.	<u>방식으로 할 수 있다.</u> 第266條(公訴狀副本의 送達) ---- ----- ----- <u>부분(공소장에 정 보저장매체등이 포함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등의 등본을 포함 한다)</u>----- -----.
---	--

- 1)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 2)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4)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5) **제266조(공소장부분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2. 현행제도 개관

가. 재판서, 공소장의 개념 및 작성방식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서와 공소장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엄격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1) 재판서의 개념

재판서란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독립된 문서를 말하는데,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재판서에는 판결서, 결정서, 명령서가 있음.

재판서는 법원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수단이자, 재판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소심의 심판대상을 특정하는 기능을 함. 또한, 재판서는 기판력, 집행력 등 재판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며,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함.

2) 재판서의 법적 성격

재판서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와는 별개의 것으로, 재판의 효력은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하여 발생하며, 재판서의 작성은 이미 발생한 재판의 효력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짐⁶⁾.

6) 민영성, 김형규, 『형사소송법』, 박영사(2025년), 388-389면

3) 재판서의 기재사항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①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 ②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③ 판결서의 경우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고(제40조),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제39조),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는 것이 원칙임(제41조).

4) 공소장의 개념

공소장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공소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면을 말하는데, 형사소송절차를 개시하는 문서이자, 법원의 심판대상을 특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범위를 고지하는 역할을 함.

5) 공소장일본주의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서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공판중심주의, 증거재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공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공소사

실에 포함되지 않아⁷⁾, 대규모 사기사건이나 조직범죄 사건 등에서는 공소장이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

나. 송달 제도

1) 송달의 의의

송달이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함.

2) 송달의 방법

「형사소송법」은 송달의 방법으로 ① 교부송달(제63조), ② 우편송달(제63조의2), ③ 공시송달(제64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⁸⁾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서류의 등본·부분이나 초본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교부송달)으로 해야함⁹⁾.

3)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형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7)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사기

8)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9)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교도관을 통하여 소환통지를 한 때(제76조 제5항),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제268조)에는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

4) 공시송달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63조¹⁰⁾),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음(제64조¹¹⁾).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¹²⁾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공시송달 방법 비교

민사소송의 공시송달은 민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¹³⁾에 따라, ① 법

-
- 10)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 11)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 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 13)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① 법 제194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행한다.

원게시판 게시,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반면¹⁴⁾,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에서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송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14) 2004년 1월 5일부터 민사소송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는 공시사항을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법원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공고→공시송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음.

3. 검토의견

대규모 경제사범 사건이나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 등에서 범죄 사실이 방대한 경우, 이를 모두 재판서(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재판서의 가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보저장매체를 활용하면 방대한 범죄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실무상 편의성이 증대됨.

개정안은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서와 공소장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송비용절감, 정보 접근성의 향상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소장, 증거 기록, 판결서 등 형사사건 기록 전반에 전자문서 이용이 가능¹⁵⁾해졌으며, 2025. 10. 10. 수사기관의 전자문서 이용이 시행되었음.¹⁶⁾

- 15)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①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사진·음성·영상 자료 등(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이 법에 따라 작성, 제출·송달 및 보존한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서류등을 작성, 제출·송달 및 보존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에 따라 변환·등재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④ 이 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⑤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서류등의 사본을 발급·교부, 제출·송달 및 보존하도록 한 경우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서류등의 원본 또는 사본으로 본다.
- 제10조(전자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판서, 공판조서,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저장매체를 첨부하는 방식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2025년 10월 이전 수사 개시 사건이나, 피고인 등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65조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이미 전자적 방식의 공시송달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충분한 인지와 방어권 보장이 필수적임.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정보 취약 계층 피고인의 경우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고령자 등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공소장 등 주요 문서를 서면으로 송달하도록 하는 보완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63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이 전자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16)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
 법률 제18485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는 **2025년 10월 10일**로 한다.